

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발 의 자 : 이은림 의원
- 의안번호 : 제1694호
- 발의일자 : 2024년 4월 3일
- 회부일자 : 2024년 4월 8일

2. 제 안 이 유

-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학대금지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야생동물을 폭넓게 보호하고자 함.
- 또한 야생동물 치료기관에서 야생동물을 학대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시장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등의 규정을 명시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야생동물의 학대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(안 제9조의2)
- 나. 야생동물치료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(안 제18조의2)

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비대상사유서)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야생동물의 학대 금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, 야생동물 치료기관에서 야생동물을 학대하는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동 조례는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)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·관리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켜 사람과 야생생물의 공존을 도모하고자 2022년 10월 제정된 바 있음.
-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시민이 늘어나면서 동물학대, 동물유기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또한 증가하고 있어 「동물보호법」에서는 소유자등¹⁾의 책임을 강화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유도하고 있으며, 이를 반영하여 「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」가 개정된 바 있음.
- 반면, 법 제8조(야생동물의 학대금지)에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내용은 동 조례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학대를 금지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세부적으로 안 제18조의2는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하는

1) 제2조(정의) 3. “소유자등”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·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.

경우를 포함하여 법 제34조의5를 준용하여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.

- 한편, 법 제8조의3에 따른 ‘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’와 법 제22조의2 ‘지정 관리 야생동물’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구체화되면 서울시 정책 현황에 맞게 추가로 개정이 필요할 것임.